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와 대상에 인천광역시 또는 군·구가 설립한 법인과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지정 요건과 유효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또는 군·구가 설립한 법인을 전문예술법인의 범위에 포함 함 (안 제15조제1항)

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대상에 시 또는 군·구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 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제5항)

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과 심사 기준, 지정취소 및 관리 기준 등을 별표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시의회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FAX : 032)440-8764
- E-mail : jbt129@korea.kr(전화 : 032-440-6224)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제9조·제12조제2항제8호·제18조의3제2항제5호·제3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 1명”으로, “부위원장 1인”을 “부위원장 1명”으로, “25인 이내”를 “2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원 1인”을 “시의원 1명”으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위촉하는 자가된다”를 “위촉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의 상근”을 “1명의 상근”으로, “2인 이내”를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서기 1인”을 “서기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및 제14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5조의3 본문 중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5조의2에 따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의거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을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또는 군·구가 설립한 법인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단서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제15조의 법인·단체 중 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와 시와 군·구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세부 지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지정 할 수 있다.

제15조의3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세부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영 3조”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3조”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50인이하”를 “50명 이하”로, “갖춘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10인 이상 15인 이내”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의한”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50인 이내”를 “50명 이내”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3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37조의 규정에”를 “제37조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취소 기준 등(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3 관련)

1. 지정대상

가. 공통요건

- 1) 인천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 2) 법인인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요건

- 1) 공연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 2)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실적을 1건 이상으로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전시분야

-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 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지정시 평가 기준

-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나. 지정 1차년도에 작성된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4. 지정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5. 지정취소

- 가. 조례 제15조제2에 따라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3) 공연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
 - 4)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1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 나. 시장은 가목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지정법인·단체의 관리

- 가.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나.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 인천광역시 ----- ----- -----.
제2조(설치 및 기능) (생 략) 1. ~ 2. (생 략) 3. <u>시</u>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u>기타</u>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2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인천광역시</u> (이하 “시” 라 한다) -----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시문화관광체육국장, 시 교육청교육국장 및 <u>시의원 1인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u>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25명 이내-----.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의원 1명</u> ----- ----- <u>사람 중에서</u> ----- 위촉 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u>1인</u> 의 상근 전문위원과 <u>2인</u>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u>자중에서</u>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6조(전문위원) ① ----- <u>1명</u> 의 상근 ----- <u>2명</u> 이내의 -----. ② ----- ----- <u>사람</u> 중에서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해촉) (생략)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u>기타의</u>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생략)	제7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 <u>그 밖의</u> ----- 2.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u>간사 1인과 서기 1인</u> 을 둔다. ② ~ ③ (생략)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 <u>간사 1명-- 서기 1명</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u>기타</u>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 ----- ----- <u>그 밖에</u> -----.
제10조(보수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u>의하여</u>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와 실비보상) ----- ----- ----- <u>따라</u> ----- <u>범위에서</u> ----- -----.
제12조(계획수립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7. (생략) 8. <u>기타</u>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③ (생략)	제12조(계획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u>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지정·육성) ① 시장은 <u>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u>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u>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u>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u>의하여</u>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5조의2(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u>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제15조의 법인·단체 중 인천광역시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u>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지정·육성) ① ----<u>제15조의2에 따라</u> ----- ----- <u>범위에서</u> -----. ② ----- <u>제15조의2에 따라</u> ----- ----- <u>의거하여</u>----- ----- -----.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u>문화예술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또는 군·구가 설립한 법인</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u>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은 제15조의 법인·단체 중 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와 시와 군·구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부에 지정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② 제1항에 따라 ----- ----- 하는 사람----- ----- ----- ----.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세부 지정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 ----- ----- ----- ----- ----- -----. 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지정 할 수 있다. 제15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15조의2에 따라 ----- -----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	개정안
<u>때에는</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실태조사결과 예술 활동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게 된 때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군수·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 5. (생략)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18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	경우에는 ----- ----- 있으며, 세부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거짓이나 ----- ----- 받은 경우 2. ----- ----- 된 경우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 ----- 법----- ----- -----. 제18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 -----하는 사람-----

현행	개정안
에게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18조의2(미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술위원회는 <u>50인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구·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업무담당과장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u>갖춘자</u> 중에서 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의3(미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미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u>10인 이상 15인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며, 이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생략) 1. ~ 4. (생략) 5. <u>기타</u>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 ④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18조의2(미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50명 이하</u>----- ----- ----- ----- ----- ----- <u>갖춘 사람</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미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u>10명 이상 15명 이내</u>-----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9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 제18조제2항에 따라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12조제5항의 별표 2에 따른 <u>의한</u>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 -----<삭 제>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32조(임무) (생략)	제32조(임무)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문화예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u>그 밖에</u> ----- -----
제33조(위촉 등) ①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u>50인 이내</u> 의 위원으로 한다.	제33조(위촉 등) ① ----- ----- -----50명 이내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 (생략)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 <u>제1항에</u> ----- ----- ----- ----- ----- -----.

현행	개정안
제38조(군·구 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군·구 축제의 지원) ----- ----- ----- --- 범위에서 ----- -----.
제39조(축제의 평가)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제39조(축제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제37조에 ----- -----) -----) ----- ----- -----.

[별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취소 기준 등(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3 관련)

1. 지정대상

가. 공통요건

- 1) 인천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 2) 법인인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요건

- 1) 공연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 2)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실적을 1건 이상으로 한다.

2. 지정 심사 기준

가. 공연분야

- 1) 최근 2년간의 공연활동 실적에 대해 작품성·전문성·공연기획의 참신성·관객확보율·공연이나 기획에 대한 반응 등 작품의 완성도와 단체 운영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 2) 전문예술인·전문기획자·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의 보유상태와 재정상태·전용시설의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관객이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주요 작품의 보유상태·작품이나 단체의 수상경력·해외공연 참가 경력과 성과 등 공연장이나 예술단의 대외적 평가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전시분야

- 1) 최근 2년간 창작지원 및 전시 활동실적에 있어 독창성, 예술성, 참신성, 전문가 평가 및 일반 관람객 반응, 미술발전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 2) 창작 및 전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보유상태, 재정능력, 전용시설 보유상태 등 조직역량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해외진출 실적 등 경쟁력 있는 양질의 유·무형의 문화자원의 생산실적과 작가 발굴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4) 시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 등 사회 기여도를 심사한다.
- 5)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3. 재지정시 평가 기준

- 가. 제2호의 지정시 심사기준의 지속적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나. 지정 1차년도에 작성된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상태의 건전성·기부금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외부감사 의견서나 세무회계 조정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향후 2년간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토대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4. 지정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5. 지정취소

- 가. 조례 제15조제2에 따라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3) 공연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
 - 4)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1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 나. 시장은 가목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지정법인·단체의 관리

- 가.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나.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와 대상에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또는 군·구가 설립한 법인과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3. 작성자

작 성 자	문화복지위원회 강 병 수 의원
연 락 처	440 - 6046